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94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효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(이하 "구민대상"이라 한다)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"5년이상"을 "3년 이상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이 구민대상은 5개 부문”을 “구민대상은 3개 부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제·지역사회발전부문(개인 및 단체)
2. 봉사·기부부문(개인 및 단체)
3. 효행부문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·지역사회발전부문과 봉사·기부부문은 개인과 단체를 각각 시상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민회관”을 “광진문화예술회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이 때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동장 또는 부서장의 상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, 광진구민 2명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도 총괄부서에 추천할 수 있다.

제10조의2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심사기준) ① 경제·지역사회발전부문(개인 및 단체) : 지역경제 발전, 주민자치, 주민편익 증진, 준법의식 함양, 교통문화 발전, 문화예술체육 진흥, 전통문화 계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

② 봉사·기부부문(개인 및 단체) : 각종 복지사업,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, 모범 청소년, 환경보호, 공해방지, 사회공헌사업, 자선사업 등

에 필요한 금전, 물품, 재능기부 등 봉사 및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과 단체

③ 효행부문 : 어버이와 웃어른을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여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거나 4대가족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

제13조 중 “산업시찰 및 각종행사”를 “각종행사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(이하 "구민대상"이라 한다) 시상</u>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수상대상) 구민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광진구에 <u>5년이상</u>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(사업체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수여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민대상의 종류) ① <u>이 구민대상은 5개 부문</u>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지역사회발전부문</u> 2. <u>여성·청소년부문</u> 3. <u>문화예술체육부문</u> 4. <u>보건·복지부문</u> 5. <u>환경·자원봉사부문</u></p> <p>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제5조(상패·부상 등)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 ③ 수상자의 성명은 동판에 새겨 <u>구민회관</u>에 부착 영구 보존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효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(이하 "구민대상"이라 한다) 시상</u>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수상대상) ----- ----- <u>3년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조(구민대상의 종류) ① <u>구민대상은 3개 부문</u>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경제·지역사회발전부문(개인 및 단체)</u> 2. <u>봉사·기부부문(개인 및 단체)</u> 3. <u>효행부문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·지역사회발전부문과 봉사·기부부문은 개인과 단체를 각각 시상한다.</u></p> <p>제5조(상패·부상 등) ② <u>제1항에 따른</u>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 ③ 수상자의 성명은 동판에 새겨 <u>광진문화예술회관</u>에 부착 영구 보존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원회) ①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<u>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③위원은 광진구의회 의원 2명과 광진구 소속 국장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광진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후단 신설>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<u>통할</u>한다.</p>	<p>제6조(위원회) ①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③위원은 광진구의회 의원 2명과 광진구 소속 국장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광진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u>이 때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u>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<u>총괄</u>한다.</p>
<p>제9조(수상후보자 추천) <u>광진구민은 10인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,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동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대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수상후보자 추천) <u>동장 또는 부서장의 상시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, 광진구민 2명 이상의 연명 또는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도 총괄부서에 추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0조의2(수당)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의2(수당)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1조(심사기준) ①<u>지역사회발전부문 : 지역경제활성화, 교통문화발전, 주민편익증진,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, 또는 단체</u> ②<u>여성·청소년부문 :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, 정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여성 또는 단체 이거나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 청소년</u> ③<u>문화예술체육부문 : 문화, 예술진흥, 전통문화계승, 주민여가선용,사회체육 등 문화예술 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</u></p>	<p>제11조(심사기준) ① <u>경제·지역사회발전부문(개인 및 단체) : 지역경제 발전, 주민자치, 주민편익 증진, 준법의식 함양, 교통문화 발전, 문화예술체육 진흥, 전통문화 계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</u> ② <u>봉사·기부부문(개인 및 단체) : 각종 복지사업,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, 모범 청소년, 환경보호, 공해방지, 사회공헌사업,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, 물품, 재능기부 등 봉사 및 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</u></p> <p>④ <u>보건·복지부문</u> : 각종 사회복지 사업,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및 기부,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등 나눔의 실천으로 보건복지 증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</p> <p>⑤ <u>환경·자원봉사부문</u> : 자연보호, 환경보존, 공해방지, 재활용품 활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호 또는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맑고 깨끗한 지역공동체 구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</p> <p>제13조(수상자 예우) 이 상을 받은 사람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구의 실정에 따라 <u>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</u>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.</p>	<p><u>인과 단체</u></p> <p>③ <u>효행부문</u> : 어버이와 웃어른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여 효행실천이 타의 귀감이 되거나 4대가족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</p> <p>제13조(수상자 예우) 이 상을 받은 사람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구의 실정에 따라 <u>각종 행사</u>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<u>시행에</u>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.</p>